

의안번호	제18호
의결연월일	2024. 2. 22.

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4년 2월 13일, 논산시장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13일
다. 상정일자 : 2024년 2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환경과장)

- 가. 제안이유
「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3차 권고안(2021.11.22.)」에 따른
조례 제명, 본문 내용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“몰카”라는 용어를 “불법촬영”으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